사고 발생 현장에서 지불한 견인비, 과다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글_김현윤 팀장〈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Q

차량 견인 후, 부당하게 청구된 견인비 지불

정모 씨(남, 50대, 경기도 안산시)는 경기도 시흥 방면 2차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렉카(Wreck Car)로 견인을 요청했다. 사고 지점의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먼저 도착한 사설 렉카를 이용해 구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2km 정도 떨어진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 견인 사업자가 견인비 20만 원을 요구해 엉겁결에 지불했다. 이후 부당하게 청구된 견인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실제 지불할 비용보다 과다한 청구비, 차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겨울철 폭설 또는 영하의 날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의 문제로 렉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12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사례 총 1,362건 중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기준에 의하면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톤급별, 거리대별 견인 요금이 정해져 있고, 2.5톤 미만의 견인차로 10km까지 견인할 경우에는 51,600원의 견인 요금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에는 야간(20시~익일 6시),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작업 조건이 필요한 경우 기본 운임·요금에 30%를 가산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정모 씨의 경우 특수한 작업 조건이 아닌 사고 지점에서 갓길까지 구난 장비 없이 견인했다고 하면 견인 비용은 51,600원이다. 견인비 20만 원 중 51,600원을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믿을 만한 정비 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 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 구청 등에 문의·신고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관련 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